

1992년 3월 12일 제123회 참의원 내각위원회

○ 일시: 1992년 3월 12일(목) 오후 1시 1분 개회

○ 발언자:

-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 의원(정치가, 일본공산당 소속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 참의원 환경위원장)
-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국무대신(외무관료, 정치가, 자유민주당 소속, 방위청 장관, 내각관방 장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간사장, 후쿠오카 시장, 일본중국우호협회 회장·명예회장)
- 아리마 다쓰오(有馬龍夫) 정부위원(외교관, 네덜란드 대사, 독일 대사, 일본 정부 대표로 중동조사회 이사장)
- 도카리 도시카즈(戸薊利和) 설명원(노동성 직업안정국 서무과장)
- 이와사키 준조(岩崎純三) 국무대신(자유민주당 소속 참의원 의원, 총무청장관)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14889X00219920312&spkNum=186¤t=53>

○ 해제(개요 및 특징)

요시카와 의원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러 방면에 걸쳐 발군의 질의를 함.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방문 당시 미야자와 총리가 정책 연설에서 표명한 사죄가 구체적으로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둘째, 당시 모집이라는 형태로 **위안부**를 모았다고는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군에 의한 동원에 가깝다고 역설함. 셋째, 당시 여자정신대와 **중군위안부**는 다른 개념이었으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선의 여자들은 정신대 근로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알선업자의 사기에 의해 **위안부**로 사실상 강제연행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넷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후처리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역설함. 이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은 기존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되풀이하는 미온적인 자세로 답변함.

○ 주요 내용 번역

▷ **요시카와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방장관, 정부는 지금까지 **중군위안부** 문제를, 민간업자가 군과 함께 데리고 갔다고 하여 관여를 부정했습니다만, 50년 가까운 세월을 거쳐 올해 들어 드디어 구 일본군의 관여, 즉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1월 17일 미야자와 총리의 대한민국 방문 당시 정책 연설에서 일한 관계를 언급하며, ‘우

리나라와 귀국(貴國)의 관계에서 잊어선 안 될 것은 우리나라가 가해자이고 귀국이 그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간 조선반도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체험하신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반성의 뜻과 사죄의 심경을 표명합니다.’라고 하여,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로 가슴 아프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1월 13일에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중군위안부**로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 대해 충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심경을 표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강제연행되거나 사기를 당해 **중군위안부**가 된 사람들에게 대한 사죄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가토 국무대신** “1월 13일의 제 발언은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무엇에 대한 반성이고 사죄인가 하는 점입니다만, 거기에 솔직히 적혀 있듯이, 이른바 조선반도 출신 **중군위안부**분들이 과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점, 그리고 그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예전의 군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저희가 사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요시카와**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는지, 강제연행한 **중군위안부**에 대한 사죄도 포함되는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 **가토 국무대신** “예전 우리 일본의 행위로 인해 이른바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 이 경우 조선반도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정부로서는 반성의 심경을 말씀드렸고, 제 기자회견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군위안부**분들 문제에 관해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고,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데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노동자라든가 강제연행이라는 문제 등을 포함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모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분들이 경험하신 온갖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반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요시카와** “그렇다면 총리의 사죄 말씀 가운데 강제연행해온 데 대해 죄송하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네요.”

▷ **가토 국무대신** “이른바 **중군위안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시한 것으로서, 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이른바 **중군위안부** 등이 운영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모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니다.”

- ▷ **요시카와** “그렇다면, 조사해서 강제로 연행한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자료가 나왔을 때 재차 언급하겠다는 것이군요.”
- ▷ **가토 국무대신** “구체적인 형태나 과거에 어떠한 경위였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사가 그런 의미에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군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므로, 우선 그 점에 대해 사죄를 드리고자 해서 말한 것이 1월 13일의 저의 발언입니다.”
- ▷ **요시카와** “그렇다면 군의 관여는 인정됐다, 경찰이나 그 외 강제연행에 관여한 관공서가 많이 있었다는 식의 증언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연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아직 사과 내용이나 관방장관의 발언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듭 여쭙겠습니다만, 관방장관의 회견 중에 모집이라는 말이 있군요. 이 모집이라는 것은 강제연행이나 속여 데려온 것 등도 가리키는지, 이런 것은 포함하는 것인지, 그럼 그 모집의 의미에 대해 여쭙어보겠습니다.”

- ▷ **아리마 정부위원** “조사 경과에 대한 것이므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 모집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저희가 자세하게 포착한 것이 아니고, 모집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

- ▷ **요시카와** “뭐라는 겁니까?”
- ▷ **아리마 정부위원**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것이 자료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 이외의 곳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성칭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방위청에서 조사해주신 것 외에 특별히 새롭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 ▷ **요시카와** “**중군위안부**의 모집이나 **위안소**의 운영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해 왔다고 적혀 있는 거네요. 지금 물은 것은 이 모집에 관해서입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장(訴狀)」에 따르면, 모집이란 이름뿐이고 모집인 수를 할당받은 면사무소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주재소에서는 면청(面庁), 면(面)이란 촌(村)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만, 면청·면사무소 노무계(勞務係), 주재소 경찰관이 일체가 되어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불러 모으고 엄중한 도망 방지를 조치하여, 실질적으로는 모집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부기관에 의한 강제연행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모집에 대한 반성이 이 관방장관 담화의 내용인가, 아니면 일본어 문자 그대로 ‘모집’의 의미인가, 그거 조사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사 중이어서 부정하시는 겁니까?”

▷ **아리마 정부위원** “현재까지 지적하신 점을 시사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요시카와**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죄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관방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은, 요컨대 **위안소**를 경영하는 데 관여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중군 위안부**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고 강제연행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나 예컨대 이것도 이 소장에서, 원고 B라는 사람은 ‘18세 때 중년의 조선인 남성이 마을에 와서, 상하이에 가면 좋은 데가 있으니 가지 않겠느냐고 유인하고, 상하이에 도착해서 하는 일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았으며, B도 **군대 위안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상하이역 근처에서 일본인 헌병에 넘겨져 군용 트럭에 태워져 도착한 곳은 일본군대의 주둔지였다. 군인을 상대하지 않으면 일등병에게 구타당했고, 처음 1~2년은 도망치지 못하도록 경계도 삼엄하여 밖에는 일절 나갈 수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집에 임의로 응모하여, **중군위안부**가 되었다기보다는 강제연행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로 끌려왔다는 증언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를 조사하고 있지만 자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일본정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아리마 정부위원** “그런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하여 전체적으로, 아까 관방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기회에 조선반도 출신자들이 우리나라의 과거 행위로 인해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겪으신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유감의 뜻을 표명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요시카와** “노동성 나오셨습니까?”

여자정신대 명목으로 많은 조선인이 **중군위안부**로 끌려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만, 노동성은 국회 답변에서 이 점을 계속 부정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도 그 답변을 바꿀 의향은 없는가 하는 점과 **중군위안부**의 강제연행이란 것을 정부는 부정해도, 「국가총동원법」 제5조에 기초한 「정신근로령(挺身勤勞令)」, 1944년 8월 천황이 내리신 칙령입니다만, 많은 조선인 여자가 공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20만인가 그 이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제연행되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 이 칙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는.”

▷ **도카리 설명원** “여자정신대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총동원법」 제5조에 기초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 결성된 것으로서, 공장이라든가 정부의 작업소 등에서 정신근로에 종사했고, 그 동원에 관해서는 당시 국민근로동원

소(国民勤勞動員所)에서 시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중군위안부**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성 관계에서는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고, 그 후 내각관방의 지시도 있어서 더 조사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후생성 근로국이나 국민근로동원소 같은 데서 근무했던 사람에게서도 사정을 들어보았습시다만, 그런 곳의 직원, 지금 말씀드린 후생성 근로국 혹은 국민근로동원소가 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정신대와 이른바 조선인 **중군위안부**들의 관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 **요시카와**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여자정신대를 **중군위안부**와 같은 것으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노동성이 조선인 여자의, 그 당시는 일본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근로동원과 같은 강제적인 것은 이 칙령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면 그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형태로 행해졌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조선인 **중군위안부**를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네요.”
- ▷ **도카리 설명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의 관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시 후생성 근로국이라든지 또는 국민근로동원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한 범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므로, 양자 관계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었는지, 아니면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릴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사정을 들은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 ▷ **요시카와** “관방장관, **중군위안부**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이나 여러 형태로, 일본인 **중군위안부**의 경우는 그 이외의 형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 의한 최대의 여성 멸시정책이자 국가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의 구 일본군 **중군위안부**였다 해도, 그런 상황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일본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마음으로부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 멸시정책이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합니까?”

- ▷ **가토 국무대신** “전쟁이란 것이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이따금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는, 조선반도 출신이든 내지(內地) 출신이든, 지금 냉정하고 평화로운 때가 되어 보니 대단히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으로서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게 정말 형언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호소하신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음은 확실한 것 같으므로, 저희로서는 올해 반성의 마음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모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와 보도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그 사실에 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조사해보겠습니다.”

(중략)

- ▷ **요시카와** “전후처리의 책임자인 총무청(總務庁)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란 정말 질문하기가 괴롭네요. 정말로 자료를 읽는 것도 괴로운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나 조선 분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일본정부는 50년간이나 인정하지 않았고 관여해오지 않았습시다. 지금 차분히 자료를 조사한다고는 하나, 차분히 조사할 시기는 벌써 지난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먼저 전후처리 문제로서 조선의 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전후처리로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금 한국의 반일 데모는 교육이 잘못되어서 라는 식으로 정부 관계자가 언급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고 반성해나가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일조(日朝) 양국 인민의 우호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한 전후처리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 **이와사키 국무대신** “총무청은 전후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략) **종군위안부** 문제, 군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의 문제로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목숨을 잃을 만큼, 목숨을 내던질 만큼 대단히 괴로운 경험을 하신 분들을 생각할 때,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